

배포 2023. 12. 5.(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3. 12. 5.(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면) 2023. 12. 5.(화) 국무회의 종료 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

- ♣ 영재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행동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별하고 나머지 교육과정 운영, 수료자 선정 및 이수증을 발급하는 프로그램

※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 중

* 12개 교육원: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개정 전후 비교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	책임자	팀 장	차영아 (044-203-6709)
		담당자	사무관	박형수 (044-203-6710)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영재교육 신청서류 (제11조 제①항)	(모든 사람)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서' 첨부	(소속학교가 있는 사람)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서' 첨부
		(소속학교가 없는 사람) 선정신청서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 첨부

<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학급당 학생수 (제32조 제④,⑦항)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20명 이하 ☐ 영재학급: 20명 이하 ☐ 영재교육원: 20명 이하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20명 이하 ☐ 영재학급: 20명 이하 ☐ 영재교육원: 20명 이하 ✓ 단,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 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초과 허용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서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수업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로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0.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u>①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u>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u> <u>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u>

⑧ (생 략)	<u>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 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 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u> <u>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 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u> <u>⑨ (현행 제8항과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	
연 락 처	(044) 203 - 6710